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1.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8일

다. 상정일자 :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10년 11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이 용 근

가. 개정이유

동 전부개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0. 6. 10 법률 제1036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부개정되고 2011. 1. 1자로 시행되어 구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마포구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적용으로 2010.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조례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기간을 2011. 12. 31까지 연장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1) 자치구 상호간 조례명칭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감면조례」로 조례명 개정

- (2) 보칙 7개 조항을 포함한 총 21개 조항 및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
- (3) 현행 마포구세 감면조례 22개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8개 조항을 같은 법으로 이관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은 삭제
- (4) 안 제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감면 등 총 13개 세목에 대한 개별적인 감면규정 명기
- (5) 안 제15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보칙으로 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 (6) 안 부칙에서는 시행은 2011년 1월 1일로 하되 2011년부터는 조례 제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2001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가 불가하여 감면공백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7) 현행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사전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토록 규정

3. 검토보고 (전문위원 명금길)

○ 동 조례안은 국가 정책적 목적 등으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8개 세목을 이관하고 1개 세목은 삭제하고 13개 세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감면규정을 두었으며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감면내용도 확대할 수 없고 감면기간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구세감면조례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